



정주 룬다 전력 청소 유한공사 등 VS 호북 지에다 환경 공정 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民提字第16号
판결 일자	2013. 4. 13.	판결 결과	재심 신청 인용(권리자 패, 원심 취소)
1심 피고, 2심 상소인(재심신청인)	1. 정주 룬다 전력 청소 유한공사, 2. 천팅룽, 3. 우양린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피신청인)	호북 지에다 환경 공정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70조, 제207조		
영업비밀	발전소 등 시설물의 청소 기술		
키워드 (Keyword)	관할권(管辖权), 관할이의(管辖异议), 침해행위지(侵权行为地), 침해행위 실시지(侵权行为实施地), 결과 발생지(结果发生地)		

02 사건 개요

천팅룽, 우양린은 호북 지에다 환경 공정 유한공사(이하 ‘호북 지에다 공사’)의 직원으로 발전소 청소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사직 후 정주 룬다 공사를 설립하고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

1심의 원고인 호북 지에다 공사는 자신의 주소지인 ‘호북성 쩡조우시’에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피고들은 응당 피고 주소지 소재 민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관할 이의를 하였다.

1심, 2심 법원은 천팅룽, 우양린이 호북 지에다 공사에 재직하면서 상업비밀을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호북성 쩡조우시’가 침해지 법원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1심 피고들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1심 원고 (재심 신청인) ⇨ ⇐ 1심 피고 (재심 피신청인)

1심 원고의 주소지에서 1심 피고들이 상업 비밀을 수집하면서, 상업비밀 침해의 예비 행위 준비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도 '침해행위지'에 해당한다. 침해행위지라 함은 상업비밀 사용행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04 판결 요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하면, 상업비밀 침해소송의 경우 침해행위지 혹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때, '침해행위지'라 함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와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또한, 침해행위 실시지라 함은 관련 사건의 상업비밀 사용 행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라 함은 침해행위 직접 생산의 결과 발생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천팅룽, 우양린이 상업비밀을 수집한 1심 원고 호북 지에다 공사의 주소지 '쨥조우시'는 '침해행위지'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호북성 씨아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05 Key Point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유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본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의 '침해행위지'의 법적인 의미가 '권리침해행위의 실시지 혹은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히 밝히고 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된다.